

## 방통위,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

- 방심위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등의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방안 마련 요구 및 엄중 경고 등 조치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, 이하 방통위)는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정연주, 이하 방심위)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,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다.

### 위원장·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 관련

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'21년 8월부터 '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그러나, 방심위는 위원장,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.

- (위원장)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(18.8%)을 9시 이후 출근, 270일(65.2%)을 18시 이전 퇴근
- (부위원장)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(72.3%)을 9시 이후 출근, 267일(65%)을 18시 이전 퇴근
- (상임위원)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(72.7%)을 18시 이전 퇴근

※ 18시 이전 퇴근의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일정 등을 제외(위원장 122건, 부위원장 138건, 상임위원 39건 등)하고,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

###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 관련

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「방심위 예산 집행지침」에서 정한 기준단가(1인당 3만 원)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하여 집행한 사례 및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.

- 위원장 13건, 부위원장 9건, 상임위원 24건, 사무총장 2건 등 총 48건 확인

또한,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.

이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,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·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며,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.

### 기타 회계 지적사항 및 방심위 주요업무 현황 관련

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,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,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,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,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하였다.

또한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·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, 방심위는 방송·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·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하고 있는데,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, 시사,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('18년 54.4%, '22년 22.3%, '23년 12.4%) 반면,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'18년 대비 오히려 증가('18년 60.2%, '22년 88.9%, '23년 87.2%)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, 회계검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,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.

붙임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결과 요약 1부. 끝.

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담당 부서 | 운영지원과<br>감사팀 | 책임자<br>담당자 | 감사팀장<br>부감사관 | 유석균 (02-2110-1601)<br>최성열 (02-2110-1602)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
## 1. 감사 개요

### □ 감사배경

- 방송통신위원회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“방심위”)의 예산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

⇒ 이에, 「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」 및 2023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

- 인건비, 업무추진비,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등 방심위의 주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

### □ 감사범위, 기간 및 인원

- (감사범위) ’18년부터 ’23. 6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
- (기 간) ’23. 7. 3.~7. 21.(15일), 7. 26.~8. 4.(8일), 총 23일
- (인 원) 감사팀장 등 9명

### □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명)

| 구분 | 계  | 문책 | 경고 | 주의 | 통보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건수 | 15 | 1  | 1  | 10 | 3  |
| 인원 | 8  | 1  | -  | 7  | -  |

\* “업추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”건과 관련자 1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 송부

## 2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황

### ① 설치 목적 및 연혁

- (설치 근거)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(설치 목적)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
- (연혁) 2008. 5. 14. 제1기 방심위 출범, 2021. 8. 9. 제5기 출범

### ② 조직 현황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
  - 9인의 위원\*으로 구성되고, 대통령이 위촉(임기 3년, 1회 연임 가능)
    - \* 대통령 추천 3인, 국회의장 추천 3인(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), 국회 소관 상임위(과방위) 추천 3인
- 사무처
  - 2실, 4국, 1센터, 1단, 27팀, 5지역사무소 (정원: 사무총장 이하 201명)

### ③ 예산 및 급여 수준

- 2023년도 예산 : 총 368억 2천 4백만 원  
(단위 : 백만 원)

| 수 입                |        | 지 출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내 역                | 예산액    | 내 역                | 예산액    |
| 계                  | 36,824 | 계                  | 36,824 |
| 1. 국가보조금(방송통신발전기금) | 36,824 | 1. 운영비(인건비, 경상비)   | 25,411 |
|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    | 36,824 | 2. 사업비(방송심의, 통신심의) | 11,413 |

- 임원 및 직원 급여 현황

(단위 : 만 원)

| 구분        | 위원장    |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| 사무총장   | 직원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일반직   | 계약직   | 전체    |
| '23년 평균연봉 | 19,061 | 18,075      | 16,263 | 6,350 | 3,080 | 5,562 |

## ④ 주요 업무현황

- 방심위의 직무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규정

- 「방송법」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
-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·의결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(음란영상, 청소년 유해 매체물, 불법정보의 유통 등)의 심의
-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·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

### 가. 방송심의

- 방심위는 「방송법」 제32조에 규정된 방송·중계유선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 등을 유지하는지 심의
-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·의견제시 또는 방통위에 제재조치 요청

### 나. 통신심의

- 방심위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 등을 심의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정요구 또는 방통위에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·정지 등 요청

### 다. 방송·통신 모니터

-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심의대상을 인지하기 위해 방송·통신 모니터를 실시
  - 방송 모니터요원은 지상파TV, 종편 및 상품판매방송 등을 모니터링 하며, 통신 모니터요원은 인터넷 등의 불법·유해정보 등 모니터링 수행

### ○ 방송 및 통신 모니터 운영 현황

(단위 : 백만 원, 명)

| 구분        | 2018년  | 2019년  | 2020년  | 2021년  | 2022년  | 2023년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방송<br>모니터 | 예산     | 4,346  | 4,820  | 4,662  | 5,035  | 5,289  |
|           | 인원     | 458    | 458    | 430    | 458    | 458    |
|           | 심의상정건수 | 655    | 721    | 630    | 353    | 535    |
| 통신<br>모니터 | 예산     | 700    | 1,047  | 1,084  | 798    | 838    |
|           | 인원     | 90     | 103    | 100    | 72     | 72     |
|           | 심의상정건수 | 29,684 | 48,393 | 71,914 | 29,896 | 55,612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26,448 |

### 라. 방송·통신 민원 심의 및 처리

-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 등을 통해 처리
  - 방심위의 민원처리 기한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, 통상적으로 30일 경과 및 60일 경과 시 민원인에게 연장 통보
- 방송심의 민원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율이 '18년 54.4%에서 '22년 22.3%, '23년 12.4%로 감소 추세
  - 통신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'18년 60.2%에서 '22년 88.9%, '23년 87.2%로 50%를 넘는 수준을 유지

### ○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처리 현황

| 구분               | 2018년  | 2019년          | 2020년          | 2021년          | 2022년          | 2023년 6월말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방<br>송<br>심<br>의 | 총 접수 계 | 10,497(100%)   | 11,343(100%)   | 27,467(100%)   | 14,483(100%)   | 9,847(100%)  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이내 | 5,709(54.4%)   | 4,805(42.4%)   | 9,294(33.9%)   | 1,918(13.2%)   | 2,203(22.3%) 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경과 | 4,739(45.1%)   | 5,730(50.5%)   | 18,143(66%)    | 12,559(86.8%)  | 3,316(33.7%)   |
|                  | 1년 경과  | 48(0.5%)       | 795(7%)        | 7(0%)          | 4(0%)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민<br>원           | 계      | 10,496(100%)   | 11,330(99.9%)  | 27,444(99.9%)  | 14,481(100%)   | 5,519(56%)   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이내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,026(23.1%) 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경과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4,321(43.9%)   |
|                  | 1년 경과  | 1(0%)          | 13(0.1%)       | 23(0.1%)       | 2(0%)          | 7(0.1%)        |
| 통<br>신<br>심<br>의 | 계      | 1(0%)          | 13(0.1%)       | 23(0.1%)       | 2(0%)          | 4,328(44%)     |
|                  | 총 접수 계 | 190,090(100%)  | 148,483(100%)  | 311,889(100%)  | 286,250(100%)  | 191,432(100%)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이내 | 114,518(60.2%) | 105,626(71.1%) | 267,422(85.7%) | 147,214(51.4%) | 170,235(88.9%)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경과 | 74,747(39.3%)  | 42,529(28.6%)  | 43,558(14%)    | 138,724(48.5%) | 20,782(10.9%)  |
| 민<br>원           | 1년 경과  | 485(0.3%)      | 297(0.2%)      | 866(0.3%)      | 280(0.1%)      | 15(0%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| 189,750(99.8%) | 148,452(100%)  | 311,846(100%)  | 286,218(100%)  | 191,032(99.8%)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이내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1,665(11.1%)  |
|                  | 60일 경과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384(0.2%)      |
| 처리중              | 1년 경과  | 340(0.2%)      | 31(0%)         | 43(0%)         | 32(0%)         | 16(0%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| 340(0.2%)      | 31(0%)         | 43(0%)         | 32(0%)         | 400(0.2%)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1,823(11.3%)  |

### 3.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

#### 1 위원장 등 상임위원 및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(주의·통보)

##### 가. 위원장·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관리 방안 미비

- 방심위의 상임위원은 「방통위법」 제18조 등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3인으로 구성
- 방심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공적정책 결정·집행 및 정부와의 수시협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,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공공성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필요
- 그런데 방심위는 위원장,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기준(방심위 규칙)을 정하면서도,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 미마련\*

\* 기재부는 「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」을 통해 공공기관 상임임원도 직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범을 마련하도록 조치

- 현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3인의 '21. 8월~'23. 5월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, 특별한 사유없이 9시 이후에 출근(자택→사무실)과 18시 이전에 퇴근(사무실→자택)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

- (위원장) 근무일수 총 414일 중 78일(18.8%)을 9시 이후에 출근하고, 270일(65.2%)을 18시 이전에 퇴근
- (부위원장) 근무일수 총 411일 중 297일(72.3%)을 9시 이후에 출근하고, 267일(65%)을 18시 이전에 퇴근
- (상임위원) 근무일수 총 396일 중 288일(72.7%)을 18시 이전에 퇴근

※ 18시 이전 퇴근의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일정 등을 제외(위원장 122건, 부위원장 138건, 상임위원 39건 등)하고,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

##### 나. 유연근무제 직원의 복무관리 부적정

- 방심위 「유연근무제 운영지침」에 따르면 '23. 4. 3.부터 유연근무제 직원은 예외 없이 출퇴근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
- 그런데 '23. 4. 3. 이후 유연근무제 직원 92명의 출퇴근기록을 점검한 결과, 35명이 총 66차례에 걸쳐 출퇴근 기록을 미입력(출퇴근 중 1회만 입력)

- 전문위원 ○○○의 경우 '23. 4. 5. 07: 25분 경 출근기록만 있고 해당일 퇴근 기록이 없는 등 8회에 걸쳐 출근 시간에만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

#### 조치 방향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①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
- ② 유연근무제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

#### 2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 (문책·경고·주의)

- 방심위는 매월 위원장에게 240만 원,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 원, 사무총장에게 1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

##### 가.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사용

-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'21. 8월~'22. 1월 위원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여 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
-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이나 1인당 집행단가 기준 상한액을 위반하는 경우,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은폐

- (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)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인 '21. 8. 31. 위원장 등 7인이 점심식사를 하자, 선수금으로 69,000원(3명) 및 64,000원(4명)으로 분할 결제
- (1인당 기준단가 초과) '21. 11. 24. 위원장 등 4인이 총 158,000원의 식사를 하여 1인당 집행단가 기준(3만 원)을 초과하자, 업무추진비 카드로 116,000원만 결제하여 집행단가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식사비용을 낮추고, 차액 42,000원을 선수금에서 차감

#### 나. 1인당 기준단가 위반 및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'21. 8월~'23. 6월 총 48회\*에 걸쳐 집행단가 기준상한액(1인당 3만 원)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
  - \* 위원장 13회, 부위원장 9회, 상임위원 24회, 사무총장 2회 등 총 48회
- 실제보다 참석인원을 많게 기재하여 1인당 집행단가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
  - (위원장) '23. 2. 15. 4명이 148,000원의 점심식사(1인당 37,000원)를 하고,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명이 식사(1인당 29,600원)를 한 것으로 지출 결의
  - (부위원장) '23. 4. 27. 4명이 150,000원의 점심식사(1인당 37,500원)를 하고, ○○팀장 등 5명이 식사(1인당 30,000원)를 한 것으로 지출 결의

- 이 과정에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비서에게 사실과 다른 참석 인원을 알려주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하였고
  -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자신들이 비서에게 참석 인원을 알려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, 비서들은 위 4명이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상호 진술이 배치

#### 다. 점심시간 과도한 음주 및 근무시간 미준수

- 「방심위 예산 집행지침」 및 「취업세칙」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공식행사를 제외하고 주류 구매를 지양하고
  - 직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도록 규정
- 그런데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내부직원 등과의 점심식사에서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하여 음주한 사례 확인

- '22. 5. 4. 내부직원 3명과 소주 7병, 맥주 2병 등 음주, 13:55에 100,000원 결제
- '22. 1. 12. 내부직원 3명과 소주 5병, 막걸리 1병 등 음주, 14:03에 100,000원 결제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총장이 총 60회\*에 걸쳐 내부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점심식사 시간을 과도하게 초과(13시 30분 이후 결제)하여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례 확인

\* 위원장 4회, 부위원장 33회, 사무총장 23회 등 총 60회

- (위원장) '22. 12. 1. ○○팀장 등 4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13:41에 식대를 결제
- (부위원장) '22. 3. 31. ○○국장 등 3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14:09에 식대를 결제

**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**

- ①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·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추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**주의요구**
- ②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데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
- ③ 업무추진비 결제금액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위원장 등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제한인원을 위반하거나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선수금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한 전 부속실장을 **문책요구**

\* 전 부속실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'23. 8. 9.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

### 3 지각·조퇴·외출 제도 운영 부적정 (주의·통보)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준하여 지각·조퇴·외출 등은 연차휴가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
- 그런데 방심위는 취업세칙 등에 지각·조퇴·외출을 연차휴가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,
  - 업무지원시스템에도 지각·조퇴·외출 신청·결재 기능을 구축하지 않아 직원의 지각·조퇴·외출 시간이 확인 불가, 연차휴가 등에서도 미공제

조치  
방향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① 취업세칙 등에 지각 등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, ② 지각·조퇴·외출을 업무지원 시스템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주의요구

### 4 대외직무활동비 및 안건검토비 등 수당 지급 부적정 (주의)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 위원이 현지조사·기술검토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수용비\*로 사례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
  - \* 소모품구입 및 회의참석수당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(210-01목)
- 그런데 방심위는 비상임위원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240만 원의 대외직무활동비를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정액 지급 하여 '18~'22년 총 7억 4천만여 원을 지급하였고
  - 방송자문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면서 검토보고서 등 용역제공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위원장 50만 원, 위원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여 '18~'22년 총 7억 8천만여 원을 지급

조치  
방향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별도의 용역제공 여부에 따라 비상임 위원 및 특별위원에게 대외직무활동비 및 안건검토비 등을 지급하도록 주의요구

### 5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(주의)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방통위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
- 그런데 방심위는 '18~'19년 별도의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 직원 3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
  - ※ 방심위는 현재까지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'20년 이후 명예퇴직 직원이 없음

조치  
방향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적립한 퇴직 급여충당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

### 6 유급휴일·휴가 운영 및 기념품비 등 집행 부적정 (주의)

- 방심위는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위반하여 「근로기준법」상 휴일이 아닌 창립기념일·방송의 날을 유급휴일로 운영, '18~'22년 총 2억 8천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
  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달리 청원휴가를 과다 인정하거나, 안식휴가를 실시하여 '18~'22년 총 1억 8천만여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
- 또한, 인건비 성격을 갖는 현금성 물품으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현금성 물품인 선불형 기프트 카드(10만 원)를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('18~'22년 총 2억 3천만여 원)

조치  
방향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「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」 등 관련기준과 달리 유급휴일 등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현금성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요구

## 7 사업추진비 집행 부적정 (주의)

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(240-01목)와 관서업무추진비(240-02목)가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되고  
-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·행사 경비로, 관서업무추진비는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
-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심의 활동 및 통신심의 활동 사업추진비 예산의 내역사업으로 업무수행경비를 편성하고  
- 방송·통신심의 활동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어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직원 간담회(식사) 등에 '18년~'22년 총 6,100만여 원을 집행

**조치 방향**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사업추진비 예산을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

## 8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(주의·통보)

- 방심위는 '23년 특근매식비로 총 4,854만 원의 예산을 편성·집행
- 그런데 방심위는 초과근무 견별로 특근매식비를 각각 집행·증빙하도록 하지 않고, 부서별로 주변음식점들에 식사 구매장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 
- 직원들이 임의로 식사 등을 하고 장부에 기입하면 일정 금액을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
- 그 결과, '23. 3. 1~5. 31. 29개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집행 요건\*을 갖추지 못한 직원(월별 189~209명)이 총 605회에 걸쳐 3,081,300원을 집행

\* 요건: 근무개시 전, 종료 후,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등

**조치 방향**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① 집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집행한 특근매식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
② 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

## 9 지역사무소 근무 지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부적정 (주의)

- 방심위는 「지역사무소 관사임차 및 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임차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
- 그런데 방심위는 '18~'20년 이미 임차계약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 직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지원 한도액이 상향됐다는 사유로 상향분 총 3,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\*

\* 개인용도로 사용된 임차보증금은 임차계약 종료 후 전액 회수

**조치 방향**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임차보증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관련자에게 주의요구

## 10 조사연구과제 입찰공고 부적정 (주의)

-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도록 규정
- 그런데 방심위는 '18~'22년 2천만 원 초과 조사연구과제 16건(총 4.4억 원)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용역 수행자를 선정
- 그 결과, 유효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'22년의 경우 총 7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

**조치 방향**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조사연구과제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